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3가단1642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피고1. B

2. C

3. D

변론 종결2024. 10. 29.

판결 선고2024. 12. 10.

주 문

- 별지 목록 제1, 2, 3, 4, 7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E과 피고 B 사이에 2023. 9.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E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가. E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3. 9.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66,66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E과 피고 C 사이에 2023. 9.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E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E과 피고 D 사이에 2023. 9.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E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F 주식회사는 2012. 6. 8. E에게 7,000,000원을 이율 연 36.5%, 대출기간 2015. 2. 5.까지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여 대여하였다. F 주식회사는 2015. 5. 29. G 주식회사에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6. 2. E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G 주식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11. 28. E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687267호로 E을 상대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양수받은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15,637,040원 및 그중 5,937,225원에 대하여 2019.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2. 18. 확정되었다. 2023. 11. 2. 현재 위 양수금은 원금 5,937,225원, 양수전 이자 8,533,001원, 양수후 이자 10,966,165원을 합한 25,436,391원이다.

다.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3. 3. 31. 사망하였다.

라.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E, 피고 D과 피고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마. 망인은, 1985. 2. 7. 별지 목록 제1, 3, 5, 6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제1부동산', '제3부동산', '제5부동산', '제6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2019. 2. 1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1984. 11. 15. 별지 목록 제4, 7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제4부동산', '제7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1987. 9. 24.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8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고, 제1 내지 8부동산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 전부이다.

바. 망인의 사후 2023. 9. 25. 피고들과 E은, 피고 B이 제1, 2, 3, 4, 5, 7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피고 C이 제6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며, 피고 D이 제8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제1, 2, 3, 4, 5, 7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23. 10. 6. 접수 제10733호로 2023. 3.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제6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23. 10. 6. 접수 제10734호로 2023. 3.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제8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23. 10. 6. 접수 제10735호로 2023. 3.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피고 B은 2023. 10. 23. 제5부동산에 관하여 2023. 10.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9,300,000원이다.

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었던 제1 내지 8부동산들 중 2/9 지분 외 다른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의 발생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채무자 E이 피고들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거나,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채무자 E 소유 지분 부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인 E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다만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또는 성립범위를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 E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들이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나아가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E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가. 제1 내지 4, 6 내지 8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의 방법

1)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E은 피상속인인 망인의 사망으로 법률(민법 제1005조, 제187조)에 의하여 제1 내지 8부동산 중 각 2/9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제1 내지 4, 6 내지 8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E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고, 제5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익자인 피고 B이 I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피고 B을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3) 따라서 E과 피고 B 사이에 제1 내지 4, 7부동산 중 각 2/9 지분, E과 피고 C 사이에 제6부동산 중 2/9 지분, E과 피고 D 사이에 제8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3. 9. 25.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을 위해 J에게, 피고 B은 제1 내지 4, 7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제6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제8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제5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의 방법

1) 제5부동산의 2023년 10월경 가액은 9,3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제5부동산의 가액도 9,300,000원으로 추인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부분은 위 9,300,000원인데, 그중 E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2,066,666원(= 9,300,000원 × 2/9, 원 미만 버림)이다.

2) 따라서 E과 피고 B 사이에 제5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3. 9. 25.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E에 대한 양수금채권 합계액 이내로서 제5부동산 중 E 상속지분 상당액인 위 2,066,66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그 원상회복을 위해 수익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0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사방헤미

별지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에 피고들과 E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일자를 등기부에 기재된 "2023. 3. 31."로 기재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된 상속재산분할협의일자는 "2023. 9. 25."이므로, 위 "2023. 3. 31."은 "2023. 9. 25."의 오키로 보아 이를 정정한다.